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외장
람	

제1558호 2020. 11. 16(월)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08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 1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 11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9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14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34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 1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38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21

인천광역시 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1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1008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소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책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이 구민과의 공적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를 기획예산실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며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와 관련부서(이하 “주관부서 등”이라 한다)를 지정한다.

③ 주관부서 등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공약사업별로 수행하고,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공약사항 확정)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약사항 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
2. 사업의 적정성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

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4. 사업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항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주관부서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5조에 따른 공약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천계획을 세워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사항 취지에 맞는 공약사업 선정

2.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나.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다.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와 반영

4. 효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

6.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7.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① 주관부서 등의 장은 실천계획이 확정된 후에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로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계획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관리카드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 등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평가단은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 추진이 부족한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③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⑤ 평가단원은 제3항에 따른 정원 범위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구민, 사회단체원, 대학교수 등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0조(평가단의 임기)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며 평가를 총괄한다.

-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촉의 해제)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평가방법 및 결과 등) ① 공약이행 평가는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구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공개)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변경 및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공약이행 평가에 참석한 평가단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약사항 검토 결과

공약사항																																											
공약내용 (요 약)																																											
검토 결과																																											
관련현황																																											
추진계획 (잠 정)																																											
사업소요액 (단위:백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10%;">계</th> <th style="width: 10%;">국비</th> <th style="width: 10%;">시비</th> <th style="width: 10%;">구비</th> <th style="width: 10%;">기타</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년차</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년차</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년차</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년차</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임기 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임기 후					
구 분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임기 후																																											
추진상문제점 및 대안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임기내 가능 <input type="checkbox"/> 장기 추진 <input type="checkbox"/> 추진 불가																																										
주관부서 (관련부서)	부서명 : 팀명 : 담당자(전화) :																																										

[별지 제2호서식]

공약사항 실천계획

관리번호		공약명	
------	--	-----	--

담당부서		담당	(☎)	담당자	(☎)
관련부서		담당	(☎)	담당자	(☎)

사업성격		사업주체			완료시기		재원조달방안				소요예산
신규	계속	국가	시	구	임기 내	임기 후	자체	보조	기타	비예산	

사업목표

○

개요

○

연도별 실천계획

연도	실천계획	추진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임기 후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임기 후					

향후추진계획

○

기대효과

○

[별지 제3호서식]

공약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공약명			
------	--	-----	--	--	--

주관부서		담 당	(☎)	담당자	(☎)
관련부서		담 당	(☎)	담당자	(☎)

추진사항						소요예산	이행단계	추진율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부진	미착수	기타			

사업개요

○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실적

연 도	이행률	달성율	연도별 추진사항
1년차	%	%	
2년차	%	%	
3년차	%	%	
4년차	%	%	
임기 후	%	%	

※ 이행률 : 공약사항 전체기준 추진성과 (민선7기 동안의 성과)
 ※ 달성률 : 해당 연도별 당초계획 대비 추진성과 (해당 연도 성과)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임기 후					

그동안 추진사항

○

문제점 및 대책

○

향후 추진계획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11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10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개팀을 두며 구성인원은 다음과 같다”를 “1국 2팀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2 중 “센터의 조직체계 및 임무”를 “조직체계”로 한다.

제10조 중 “교육홍보팀장”을 “교육운영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센터 회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제2항 중 “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를 “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로 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다음연도”를 각각 “다음 연도”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8조제5항 중 “별표 2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18조의2 본문 중 “운영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센터 장이하며”를 “센터장이 하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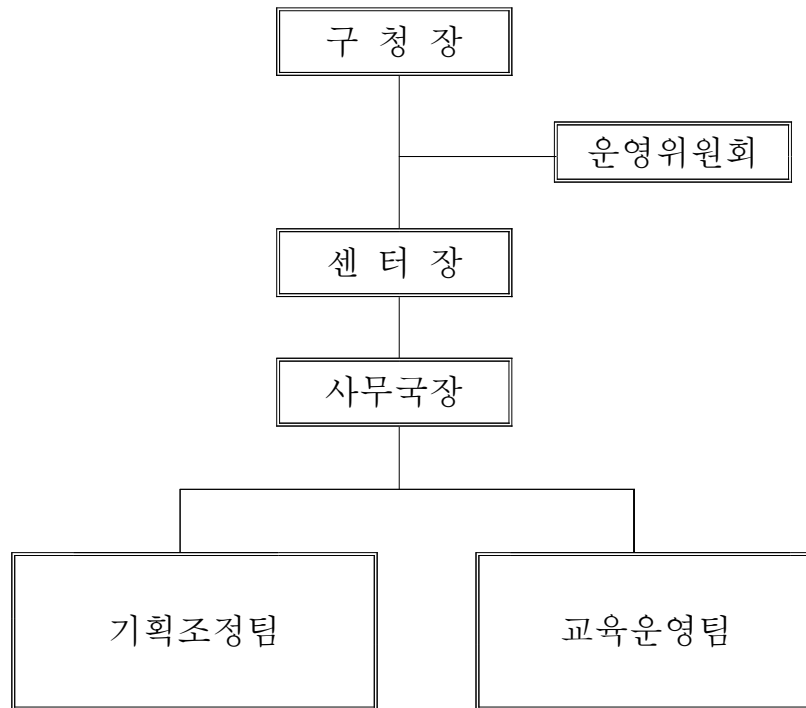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센터의 조직체계 (제3조의2 관련)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0-19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9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 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1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9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주)우미대한제2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자 박영희)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9블록
 - 나. 대지면적 : 31,541m²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02,900.0027m² (지하2층, 지상29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8개동 765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269,794,000천원
4. 사업기간 : 2020. 02. 20. ~ 2022. 09. 20.

5. 변경사항

- 가. 사업주체 변경 : 우미건설(주) → (주)우미대한제2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나. 시공자 우미건설(주) 대표자 변경 : 이석준 → 배영한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0 - 1734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및 폐기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등록 및 폐기 사유

○ 조직개편(2020. 11. 2.)에 따른 부서 신설 및 통·폐합

2. 공인의 최초 사용일 : 2020년 11월 12일

3. 등록 및 폐기 공인 내역

“별첨 참조”

등록 공인 목록

연번	공인명	종 류	규 격	등록사유	비 고
1	인천광역시서구감염병대응과분임재무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	
2	인천광역시서구감염병대응과일상경비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	
3	인천광역시서구감염병대응과분임물품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	
4	인천광역시서구감염병대응과분임징수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	
5	인천광역시서구감염병대응과물품운용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	

폐기 공인 목록

연번	공인명	종 류	규 격	등록사유	비 고
1	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지원과분임재무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2	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지원과분임징수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3	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4	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지원과분임물품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5	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지원과물품운용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 등록 공인 내역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감염병대응과 분임재무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	2020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서구감염병대응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	2020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서구감염병대응과 분임물품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	2020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서구감염병대응과 분임징수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	2020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서구감염병대응과 물품운동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	2020년 11월 12일	

□ 폐기 공인 내역

폐기공인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지원과 분임재무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2020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지원과 분임징수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2020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2020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지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2020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지원과 물품운동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2020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제2020-1738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1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20. 11. 16. ~ 2020. 11. 30.(15일간)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인천35마4667 외 9건(붙임 참조)		
	차 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5747, FAX 032-560-2793)		

3. 유 의 사 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4)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57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비고
1	인천35마4667	이*대	2020.10.12	
2	인천70라7580	정*언	2020.10.12	
3	34버6637	**모터스(주)	2020.10.15	
4	인천80머5064	이*웅	2020.10.15	
5	26수2431	김*희	2020.10.22	
6	22주3863	김*영	2020.10.28	
7	34우3729	김*진	2020.10.28	
8	16주7372	이*욱	2020.10.29	
9	59두2535	김*완	2020.10.30	
10	20무6605	유*란	2020.10.30	